지식재산(IP) 가치평가 혁신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견인

#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

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Management Center

www.kipa.org
www.iphub.or.kr
smart.kipa.org


한국발명진흥회
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


| 구 분 | | 문 의 처 | 부 서 명 |
|---|---|---|---|
| 지 식 재 산 평가지원사업 | IP담보대출 | 02-3459-2922/2925 | 지식재산 평가지원실 (지식재산금융센터) |
| | I P 보 증 | 02-3459-2944 | |
| | I P 투 자 | 02-3459-2923/2942 | |
| | I P 사 업 화 | 02-3459-2935 | |
| 표 본 조 사 | | 02-3459-2934 | 지식재산 평가품질관리실 |
| 타당성조사 | | 02-3459-2908 | |
| 평가기법 개발 | | 02-3459-2709 | |
| 특허분석평가시스템 (SMARTS) | | 02-3459-2805 | 지식재산 평가정보실 |
| 평가정보체계 (IP-Hub) | | 02-3459-2895 | |

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

지식재산의 가치는
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.

IP금융 및 IP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해
특허청 · 한국발명진흥회가
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.

# CONTENTS


**1.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소개** 02

**2. 사업소개** 06

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06

담보산업재산권 매입·활용사업 11

표본조사 12

타당성조사 13

평가기법 개발 14

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5) 15

평가정보체계(IP-Hub) 16

**3. 부록** 17

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17

사업 FAQ 18

# 1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소개

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발명진흥법 제31조6에 의거하여 설립된
'발명 등의 평가'에 대한 평가지원, 표본조사, 타당성조사,
평가정보체계,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
특허청 지정 법정 기관입니다.

## 주요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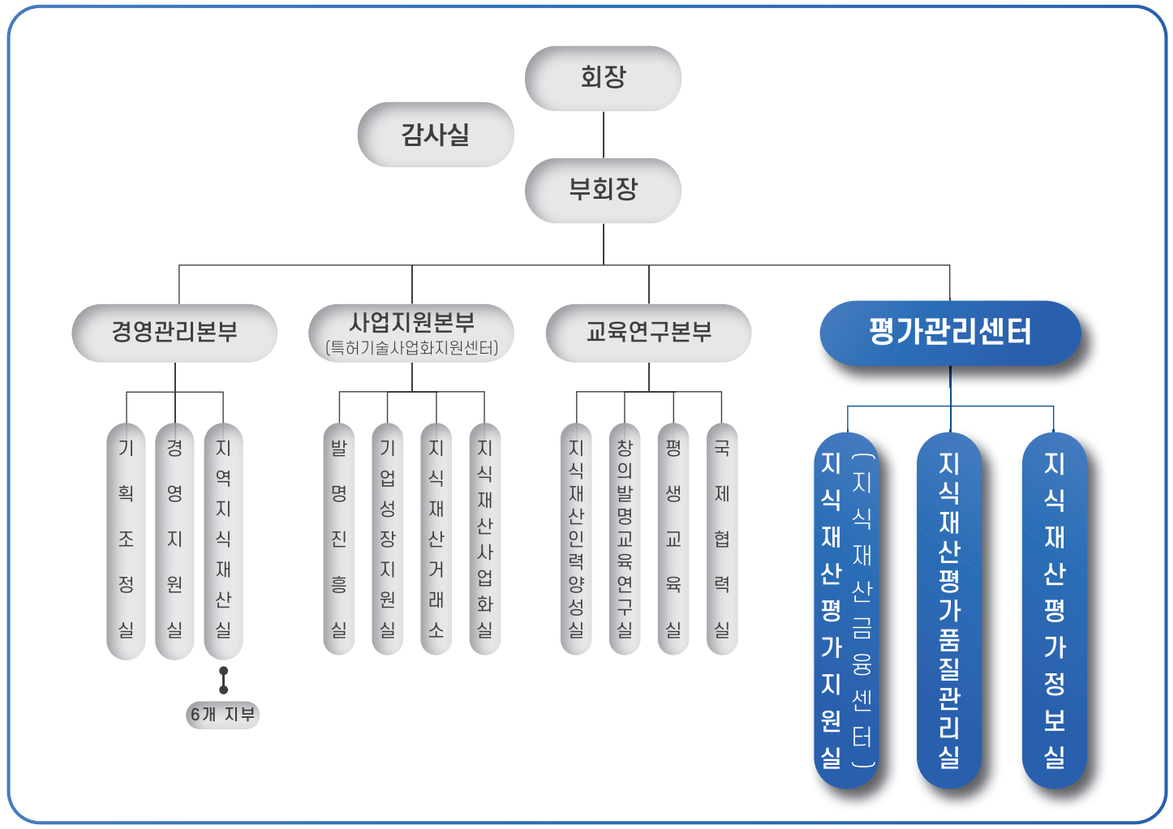


**IP금융 활성화 선도 및 IP가치평가 확산**

### 지식재산평가지원실

- **IP금융연계 평가지원사업**
- **IP사업화연계 평가지원사업**
- 혁신금융상품운용지원
- 회수지원기구 운영
- IP금융 포럼 및 협의회 등

**IP가치평가 품질 향상 및 인력 양성**

###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

- **표본조사 및 타당성조사**
- **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**
- 평가기준수립 및 지원
- 평가전문인력 역량강화
- 협의회 및 컨퍼런스 등

**특허분석평가 시스템 및 IP평가정보체계 개발 · 구축**

### 지식재산평가정보실

- **SMART5 운영**
- **IP평가정보체계 운영**
- AI가치평가시스템 개발
- 新평가등급시스템 개발
- 평가정보 준거DB 구축 등

# ② 사업 소개

##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

### IP금융연계

#### IP담보대출

**활용 방법**

우수한 지식재산(등록 특허)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협약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,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얻는 가치로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**자격 요건**

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

*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

**초기 중견기업 :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(단, 전년도 매출액 3,000억원 미만)

**지원 내용**

특허청 협약은행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,
이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경우, 지식재산평가비용의 50% 지원

*일부는 특허청이 지원, 일부는 은행이 지원(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)

**신청 절차**

**STEP 1**

협약은행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, IP담보대출 상품 상담·예비평가

**STEP 2**

협약은행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경우, 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 진행 시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

**협약은행별 IP담보대출 상품명**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KDB산업은행 1588-1500 | IP담보대출 | NH농협은행 1661-3000 | NH지식재산권 담보대출 |
| 신한은행 1577-8008 |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| 우리은행 1588-5000 | 우리 CUBE론-IP |
| 하나은행 1599-1111 | IP담보대출 | IBK기업은행 1588-2588 | IP사업화자금대출 |
| KB국민은행 1800-9500 | KB더드림 IP담보대출 | DGB대구은행 1566-5050 |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 |
| BNK부산은행 1544-6200 | IP담보대출 | BNK경남은행 1600-8585 | BNK Active IP담보대출 |

*대출가능 여부,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상품운영에 관한 내용은 은행별 내부 규정에 따르며, 세부 내용은 은행 각 지점으로 문의

*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
한국발명진흥회(www.kipa.org) 또는 평가정보체계(www.iphub.or.kr)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

#### IP보증

**활용 방법**

우수한 지식재산(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)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협약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평가 보증상품을 활용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,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으로부터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**자격 요건**

출원 중인 특허의 출원인 또는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

*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

**초기 중견기업 :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(단, 전년도 매출액 3,000억원 미만)

**지원 내용**

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,
이를 바탕으로 보증대출을 진행하는 경우, 지식재산평가비용의 60% 지원

*일부는 특허청이 지원, 일부는 보증기금(은행)이 지원

**신청 절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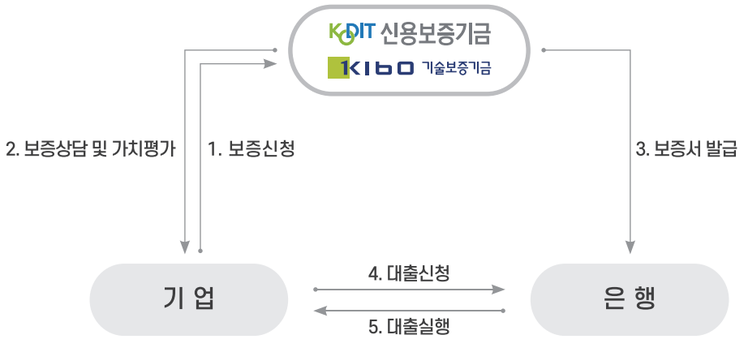


**협약기관별 IP평가보증 상품명**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588-6565 | 지식재산가치 평가보증 | KIBO 기술보증기금 1544-1120 | 지식재산(IP) 평가보증 |

*보증한도, 보증비율 및 보증료는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기금의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

*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
한국발명진흥회(www.kipa.org) 또는 평가정보체계(www.iphub.or.kr)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#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

## IP금융연계

### IP투자

**활용 방법**

우수한 지식재산(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)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특허기술사업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실사, 분석 및 평가 내용을 투자 유치에 활용 가능합니다.

**자격 요건**

출원 중인 특허의 출원인 또는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

*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

**초기 중견기업 :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(단, 전년도 매출액 3,000억원 미만)

**지원 내용**

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이 산출한 지식재산평가비용의 80% 지원(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)

| 구분 | 평가비용 | 국고지원액 | 지원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가치형 | 1,500만원 (VAT 별도) | 평가비용의 80% 이내 (우대 10%) | 1,200만원 | 평가비용은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|
| 등급형 | 750만원 (VAT 별도) | | 600만원 | |

**우대 지원**

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 10%까지 추가 우대

- 우대조건 : 2030청년기업,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,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 등

*자세한 우대지원 조건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

**예산 범위내로 한하며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**신청 절차**

투자기관과의 투자상담 및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과의 평가상담 후, 사업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(ipv_too@kipa.org)로 신청하며, 투자결정은 투자기관의 투자심의 결과에 따름

**유의 사항**

· 신청인은 자기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.

·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투자기관을 매칭하거나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. 논의 중인 투자기관이 없는 경우 유관 기관(한국벤처투자,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등)들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.

· 최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·중도 포기 등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제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*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한국발명진흥회(www.kipa.org) 또는 평가정보체계(www.iphub.or.kr)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## 우수사례

### A사 (IP담보대출)

▶ **기업개요**

- 금속 소재를 가공하여 가전, 의료기기 등의 외관제품을 제조하는 기업

▶ **지원내용**

- 금속 표면처리 관련 사업 확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홍보 자금이 필요하던 중 '22년도에 IP담보대출연계 IP평가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 받아 운영자금 확보

▶ **후속성과**

- '21년 대비 '22년도 영업이익 약 90% 증가

### B사 (IP보증)

▶ **기업개요**

- 반도체 장비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

▶ **지원내용**

- 당초 예상보다 신축 공장 가동 지연 및 신제품 테스트 기간 장기화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졌으나, '22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보증기금을 통해 2.6억원의 운영자금 확보

▶ **후속성과**

- 신축공장 마련 및 설비 투자로 우수한 세라믹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됨

### C사 (IP투자)

▶ **기업개요**

- AI연산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

▶ **지원내용**

- '21년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가치평가형 평가보고서를 활용(1200만원 지원)하여 B투자기관 등에서140억원(Series A) 투자유치

▶ **후속성과**

- '21년 800억원 규모 Series B 투자 유치
- '22년 C대기업과 '컴퓨터비전-메타버스-하이퍼스케일 공동사업'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## IP사업화연계

### IP사업화

| | |
|---|---|
| 활용 방법 |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 분석, 비교 분석, 사업타당성 분석 등 지식재산평가를 통해 기술거래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, 사업 타당성 검토, 마케팅·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 |
| 자격 요건 |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 권리자인 중소기업*또는 개인(내국인)<br>*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|
| 지원 내용 |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*의 50%이내, 최대 5천만원 한도<br>(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)<br>*평가비용 : 특허청장이 지정, 고시한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에서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 상의 금액 |
| 우대 지원 |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 10%까지 추가 우대<br>- 우대조건 : 2030청년기업,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,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 등<br>*자세한 우대지원 조건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<br>**예산 범위내로 한하며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|
| 신청 절차 | STEP 1 신청인↔평가기관 사전상담 → STEP 2 온라인 신청 신청/접수 → STEP 3 선정심사 심의 → STEP 4 최종 선정 → 계약체결 → STEP 5 신청인↔평가기관 → 평가수행 → STEP 6 평가기관 → 평가비용지원 → STEP 7 평가기관 |
| 유의 사항 | · 사업신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최종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가능합니다. (신청자가 법인의 대표이나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)<br>· 신청인은 견적서상 평가비용 중 자기부담금과 총 평가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.<br>*자기부담금 : 평가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<br>·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
*상기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
한국발명진흥회(www.kipa.org) 또는 평가정보체계(www.iphub.or.kr)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## IP담보 회수지원기구

### 사업내용

IP담보대출에서 채무불이행 발생 시, 은행이 처분가능하게 된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에서 매입하고, 매입한 IP의 수익화를 추진합니다

###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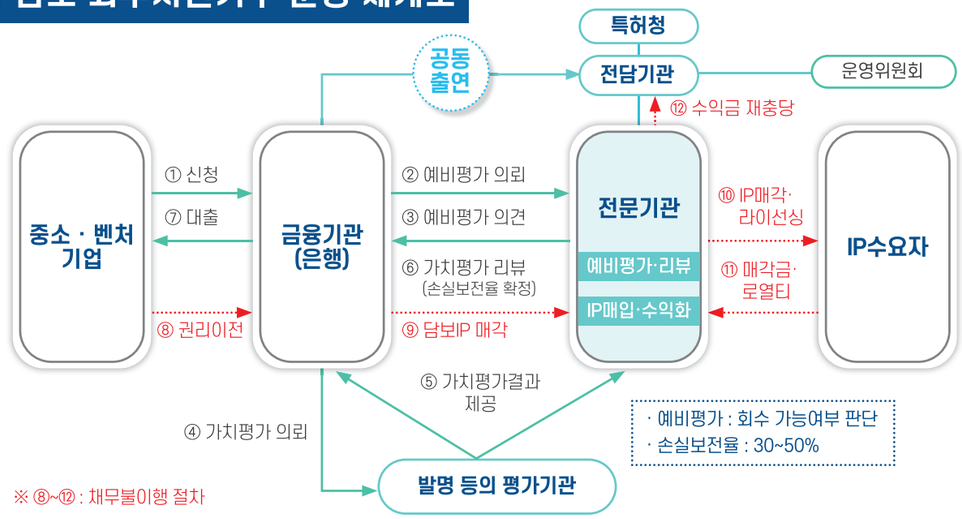


### 협약은행 : 총 12곳

KDB산업은행 · IBK기업은행 · NH농협은행 · 신한은행
우리은행 · 하나은행 · KB국민은행 · DGB대구은행
BNK부산은행 · 광주은행 · 전북은행 · BNK경남은행

| 참여시기 | 출연 은행 |
|---|---|
| '20년~ | 산업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 등 총 7곳 |
| '21년~ |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 등 총 5곳 |

# 표본조사

| | |
|---|---|
| **법 적 근 거** |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(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) |
| **목 적** |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를 무작위 및 우선추출방식으로 일정 비율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점검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합니다. |

**표본조사 절차**

| | |
|---|---|
| **계획 수립** | ▶ 조사계획 수립 및 보고<br>- 표본조사 추진방향 및 표본설계 방향<br>- 수행체계 및 조사일정<br>- 표본조사결과의 활용계획<br>▶ 표본설계<br>- 모집단 확정 및 표본추출틀 구축<br>- 모집단 분석 및 층화변수 결정<br>-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|
| **표본추출 및 수집** | ▶ 표본추출<br>- 무작위추출 및 우선추출<br>▶ 조사 대상 평가 결과서 수집 |
| **표본 조사** | ▶ 조사책임자,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반 운영<br>▶ 평가 결과서 품질 판단 및 점검<br>▶ 내부 점검 건에 대한 외부 심의위원회 운영 |
| **환류 및 활용** | ▶ 결과 분석 및 환류<br>- 발명 등의 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<br>- 결과 안내 및 평가품질제고 |

# 타당성조사

| | |
|---|---|
| **법 적 근 거** |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(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) |
| **목 적** |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가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, 특허청장, 국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합니다. |

**타당성조사 절차**

| | |
|---|---|
| **접수** | ▶ 타당성조사 접수 및 담당자 지정 |
| **회부기준검토** | ▶ 타당성조사 회부 여부 판단<br>- 회부기준 검토<br>- 타당성조사 중지 또는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종료 해당하지 않으면 타당성조사 착수 |
| **타당성 조사** | ▶ 타당성조사<br>- 계획 수립, 조사반 구성<br>- 착수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송<br>- 기초자료검토<br>- 현장조사, 질문조사<br>- 검토보고서 작성 |
| **심의위원회** | ▶ 심의위원회 운영<br>- 검토보고서 적정성 심의 |

# 평가기법 개발

**법적근거**

발명진흥법 제31조의3 (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)

**목적**

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.

**평가기법 개발 내용**

▶ 평가대상의 특수성 및 제반환경을 고려한 평가기법 연구 및 개발
▶ 평가목적별 지식재산·기술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모델 개발

**<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평가대상 확대 >**

| 기존 | | 발명진흥법 개정 이후 |
|---|---|---|
|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| ▶ |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, 출원중인 특허, 영업비밀, 배치설계 |
| 발명 | | 발명 등 |

**지식재산 가치평가 가이드**

▶ 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개정
▶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가이드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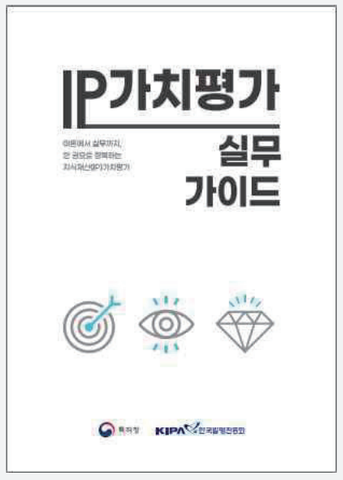


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에
도움이 될 수 있는
실무적 평가방법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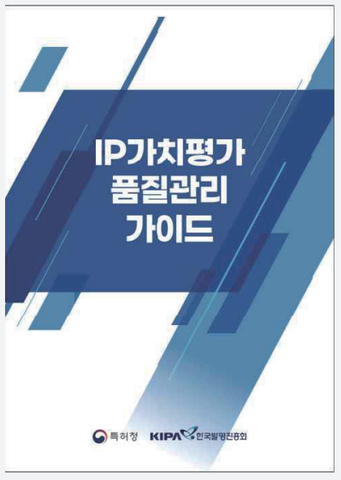


평가 결과서의 품질을 유지하거나
향상할 수 있도록
품질관리 기준을 제시

#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5)

## 서비스 개요

### SMART5란 무엇인가요?

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한 평가모델을 통해, 특허번호 입력으로 손쉽게 평가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특허 등급평가시스템입니다.

### 이용 절차

SMART5 홈페이지(smart.kipa.org)에서 회원가입, 이용신청 및 결제(건별·연간 신청)한 뒤 특허번호 입력을 통해 즉시 평가 및 조회가 가능

*특허 등록 결정 후 DB 반영 시간 (2~3개월) 소요

### 평가 대상

한국, 미국, 유럽, 중국, 일본의 등록 특허이며, 권리성, 기술성, 활용성의 평가 점수와 평가 등급(AAA~C, 9등급)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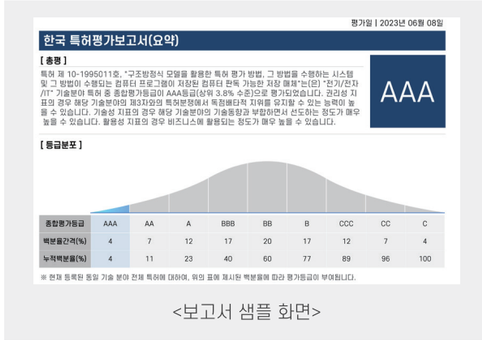


<보고서 샘플 화면>

## 활용 사례

### 보유특허 관리

· 연차료 절감을 위해 보유특허 포기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
· 한 번에 최대 500건까지 평가가능하므로 시간&비용절감

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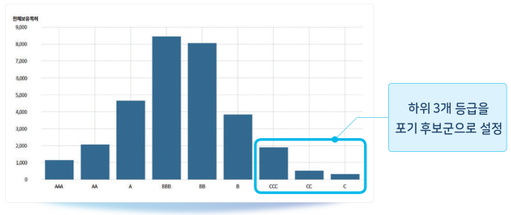


### IP금융

지식재산우대보증 SMART5 등급과 연계한 보증상품 ▶ 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MART5 B등급 이상

### 국가 R&D 성과평가

국가 R&D 성과평가의 표준성과지표 : 기술적 성과 中

### 기술이전

SMART5의 유사특허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잠재수요기업 발굴

**01 우수특허 선별**
SMART5를 활용해 우수특허 선별

**02 유사특허 분석**
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 분석

**03 유사특허 보유기업 현황**

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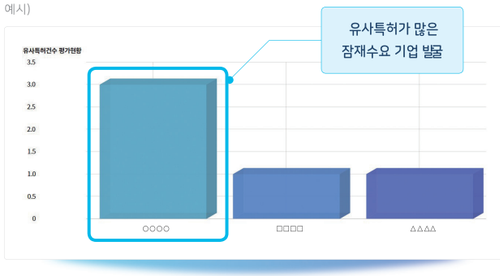

# 평가정보체계(IP-Hu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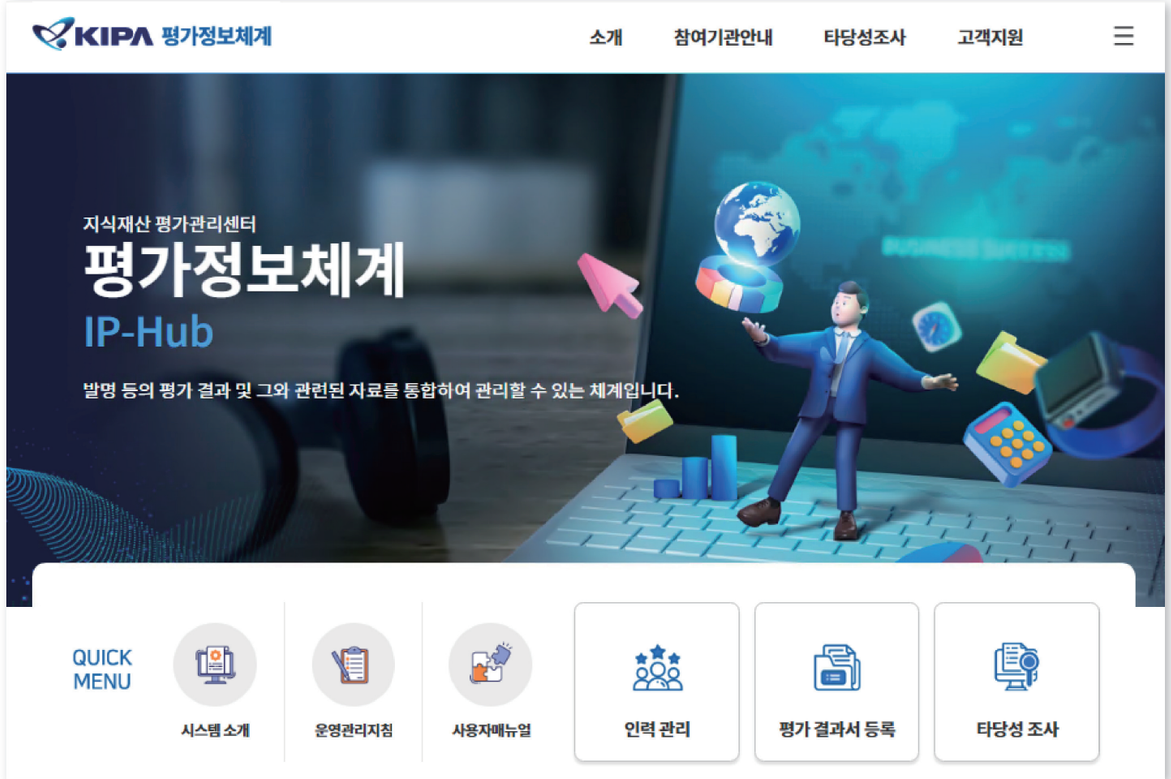


## 평가정보체계란? (IP-Hub)

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
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.

근거 : 발명진흥법 제31조의5

**평가 인력 및 평가 결과서 등록**

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투입된 인력 및 평가 정보 관리

**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**

IP금융연계(IP담보, IP보증, IP투자) 및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및 접수

**평가정보 환류**

평가 결과서를 분석 · 가공하여 가치평가용 핵심변수의 준거 정보 제공



#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('23)

## 평가정보 · 특허법인

| | | |
|---|---|---|
| dun & bradstreet<br>nicednb.com<br>02-2122-1340 | NICE평가정보<br>biz.nicetcb.co.kr<br>02-3771-1090 | Leadigm<br>leadigmgroup.com<br>02-6958-6958 |
| WIPS<br>wipscorp.com<br>02-3153-7931 | YOU ME PATENT & LAW FIRM<br>kr.youme.com<br>02-3458-0155 | 이크레더블<br>ecredible.co.kr<br>02-2101-9243 |
| JD RESEARCH<br>jd-research.com<br>031-8039-6376 | 주원아이피<br>joowonpat.com<br>02-6953-1716 | INNOBIZ 이노비즈협회<br>innobiz.or.kr/ib<br>031-628-9625 |
| KTG<br>iktg.com<br>070-7805-5706 | 특허법인 다나<br>danapat.com<br>02-6957-9931 | DARAE Law & IP Group<br>daraelaw.co.kr<br>02-3475-7774 |
| 특허법인 도담<br>dodamip.com<br>031-605-4134 | 특허법인 시공<br>sigong-ip.com<br>02-6453-9105 | 특허법인 RPM<br>rpmip.com<br>02-565-8038 |
| 특허법인 영비<br>youngbeeip.com<br>02-3454-0975 | HA 特許法人解顔 특허법인 해안<br>haeanip.com<br>02-3452-7103 | KTCB 한국기술신용평가(주)<br>k-tcb.com<br>02-525-7754 |
| 한국특허평가 Korea Patent Valuation<br>kpval.com<br>02-562-3771 | KODATA<br>kodata.co.kr<br>02-3215-2384 |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<br>kisti.re.kr<br>02-3299-6099 |
| KO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<br>koat.or.kr<br>063-919-1478 | | |

## 금융기관

| | | |
|---|---|---|
| KB 국민은행<br>kbstar.com<br>02-2073-3715 | 농협<br>nonghyup.com<br>02-363-6952 | 신한은행<br>shinhan.com<br>02-2151-2491 |
| 우리은행<br>wooribank.com<br>02-2002-3206 | KEB 하나은행<br>kebhana.com<br>02-2002-1559 | KDB산업은행<br>kdb.or.kr<br>02-787-6166 |
| KIBO 기술보증기금<br>kibo.or.kr<br>02-2155-3793 | KODIT 신용보증기금<br>kodit.co.kr<br>053-430-4628 | |

## 시험연구원

| | | |
|---|---|---|
|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<br>kcl.re.kr<br>02-6951-8632 |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<br>ktc.re.kr<br>031-428-7575 |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<br>ktr.or.kr<br>02-2164-0195 |

'23년 12월 기준

*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
평가기관별 문의처는 당해 연도 공고문 및 홈페이지(www.kipa.org/www.iphub.or.kr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# 사업 FAQ

## 지식재산 평가지원

**Q |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**

**A |**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(상법상 회사)과 개인사업자이므로,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.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
중견기업의 경우, (1)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(최초 3년의 유예기간)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내이며 (2) 직전 연도 매출액이 3,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**Q | 지원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추가 증빙자료가 있나요?**

**A |** 위의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,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<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>을 추가로 요청하고, 2개 사항이 모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해 사업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 시 특례 대상 여부에 '예'라고 체크하여 발급하고, 이미 당해 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국중견기업연합회(02-3275-2985)로 문의해야 합니다.

**Q | 사업화, 보증, 투자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평가에 대하여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

**A |** 동일 권리 또는 출원에 대한 평가는 동일 사업연도에 사업화, 금융(보증·투자·담보) 각 1회씩 모두 가능하나 지원 한도 5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**Q | 지식재산가치 평가 결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?**

**A |** 지식재산평가의 경우, 평가 시 설정한 활용 목적에 따라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요소 및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고,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, 평가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.

**Q | 제출서류 중 특허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?**

**A |** 등록원부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. 지식재산권의 최종 권리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, 특허청 특허로(www.patent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.

**Q | 국고지원금은 신청 기업에게 지급되나요?**

**A |** 국고지원금은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,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**지원금액에 대한 수령 권리를 평가기관에 양도**하여 **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에 직접 지급**됩니다.

## 표본조사·타당성조사·품질점검

**Q | 지식재산평가 표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?**

**A |**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이 발급한 평가결과서를 대상으로 품질점검 및 환류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.

**Q | 타당성조사는 아무나 요청하면 착수하나요?**

**A |** 타당성조사는 특허청장, 국가 및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회부기준을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중지 또는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에 착수하게 됩니다.

**Q |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이 제출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정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?**

**A |** 평가기관이 1년 이내에 1회 위반 시에는 '경고', 2회 위반 시에는 '업무정지 2개월', 3회 위반 시에는 '업무정지 6개월', 4회 위반 시에는 '지정취소' 됩니다.

**Q |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보고서는 평가결과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가요?**

**A |**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가치평가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가치평가 시에는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 내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세부평가방법과 평가요소가 실무가이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,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이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발행한 평가결과서는 발명 등의 평가결과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다만 평가결과서의 품질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표본조사(발명진흥법 제31조의4) 수행 시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기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,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 조성을 위해 실무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정·배포하고 있습니다.

**Q | 무작위추출방식과 우선추출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**

**A |** 무작위추출방식은 조사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확률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,
우선추출방식은 특정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비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**Q |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**

**A |**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, 평가결과서의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분야,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# 사업 FAQ

## 특허분석평가시스템 (SMART5)

**Q |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5)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**

**A**

① smart.kipa.org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
② 이용요금 결제
③ 검색창에 등록/출원번호 입력
④ 평가버튼 클릭
⑤ 평가보고서 조회

※ 특허 등록 후 2~3개월 후에 평가가 가능합니다.

## 평가정보체계(IP-Hub)

**Q |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건 외에 수행한 평가 결과서도 등록해야 하나요?**

**A**

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」으로서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수행 유무와 무관하게 발명 등을 평가하여 발급한 평가 결과서는 모두 평가정보체계에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 다만,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Q |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를 등록해야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?**

**A**

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평가 결과서에 명시된 **평가 결과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**에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. 또한, 평가관리센터 또는 특허청의 평가 결과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시 **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**에 평가정보체계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를 등록해야 합니다.